

#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4. 11. ~ 4. 25.)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 제318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 총 건 : 의원발의 9건

| 상<br>임<br>위<br>원<br>회 | 조례안명                                      | 발의자    | 본 회 의<br>처리결과<br>(2023. 4. 25.) |
|-----------------------|-------------------------------------------|--------|---------------------------------|
| 기획행정<br>위원회<br>(3)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영곤 의원 | 원안가결                            |
|                       |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관현 의원 | 원안가결                            |
|                       |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진종호 의원 | 수정가결                            |
| 사회문화<br>위원회<br>(2)    |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 | 임미선 의원 | 수정가결                            |
|                       |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 박대현 의원 | 수정가결                            |
| 농림수산<br>위원회<br>(1)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엄윤순 의원 | 원안가결                            |
| 경제산업<br>위원회<br>(1)    |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이무철 의원 | 원안가결                            |
| 교육<br>위원회<br>(2)      |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희철 의원 | 수정가결                            |
|                       |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박길선 의원 | 원안가결                            |

###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18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3. 4. 25.(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 제31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심영곤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국민의힘 · 삼척2)



현행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2002년)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의 근무 여건의 변화 등 행정수요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일부 시설의 확대와 신설 등을 통해 향후 건립될 강원도 신청사에 적용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실과장실·담당·직원의 1인당 면적기준이 확대되었고, 본청 및 의회의 회의실과 화장실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의원실과 체력단련실 등의 면적기준이 신설되었다.

### ▣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강원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시 운임 및 숙박비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그 밖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4조를 삭제하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고지하며,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진중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양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의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 일정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예고를 20일 이상 해야 하고, 예고에 대하여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사항을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공동발의 :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험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임미선 의원



문관현 의원



박호균 의원

## ■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방·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마약류등 오남용의 부작용 등에 대한 홍보 사업,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집중예방교육 및 상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행사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미래 강원도의 농업·농촌을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수정하며,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문 정비 및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 신농정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의 제명은 「강원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이다. ②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이 조례는 강원도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 간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를 보전하고 식품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④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 친환경농업·발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 농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과 판매·홍보 지원사업,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 및 축산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농업·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농촌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경영안정화 사업, 농정 거버넌스 관련 각종 사업, 미래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④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엄윤순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원미희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홍성기 의원

## ■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이무철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4)

■ 공동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경제인”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도에 있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경제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청년경제인으로 하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경제인,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경제인,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청년경제인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청년경제인은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청년경제인제품 개발·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청년경제인에게 신기술·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무철 의원



김용래 의원



문관현 의원



박대현 의원



임미선 의원

## ■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례의 제명은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은 각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길선 의원(교육위원장·국민의힘·원주1)

■ 공동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삼척1)

강원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강원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는 영양·식생활 관련 자료개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운영,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영양·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우수사례를 수집·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박길선 의원



조성운 의원